

# NCS 운영센터 규정

제정 2015.04.01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NCS 운영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제반 운영에 적용한다.

## 제 2장 조직 및 업무

**제3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NCS 운영센터를 총괄하며, 본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본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자문과 심의는 “NCS기반 교육과정운영위원회”를 통해 실시한다.

**제5조(업무)** 본 센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
2.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4.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업무
5. 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 지원 업무
6.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전반의 관리 및 운영 업무
7. NCS 기반 교육과정 질관리 지원 업무
8. 기타 NCS 기반 직업교육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업무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